

비전임교원 인사운영세칙

제정 1997.10. 1	개정 2004. 4. 1	개정 2014. 5. 1
개정 1998. 6.17	개정 2007. 2.16	개정 2015. 3. 1
개정 2000. 1.14	개정 2013. 3. 1	개정 2016. 3.16
개정 2003. 8. 1	개정 2013.10. 1	개정 2019. 1. 1
		개정 2019. 8. 1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한다)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비전임교원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석학교수”라 함은 노벨상수상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문적 업적이나 산학협력실적이 탁월한 자로서 본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비전임 교원을 말한다. (개정: 2016.3.16)
2. “방문교수”이라 함은 본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. (개정: 2016.3.16)(개정: 2019.1.1)
3. “특임교수”라 함은 특정분야에서 높은 사회적 명망을 갖춘 자와 본교 전임교원 재직 중 학과특임교수로 임명되어 정년퇴직 하는 자로서 대학에서 부여하는 특정업무 또는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비전임교원을 말한다.(신설: 2014.5.1) (개정: 2019.1.1)
4. “대우교수”라 함은 특정한 과목의 교육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. (개정: 2019.1.1)
5. “연구교수”라 함은 본 대학 학과(학부) 또는 부설연구소에 소속하여 연구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. (개정: 2013.10.1)(개정: 2019.1.1)
6. “기금교수”라 함은 본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. (개정: 2019.1.1)
7. “겸직교수”라 함은 산학연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타기관에 소속된 인사로서 본 대학이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비전임교원을 말한다.
8. (삭제: 2019. 8. 1)

9. (삭제: 2019. 8. 1)

10. “산학협력중점교수”라 함은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, 창업·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본 대학이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비전임 교원을 말한다. (신설: 2013.3.1)(개정: 2019.1.1)

제3조(임용절차) ① 주임교수(부속기관장 및 부설연구소장)는 비전임교원 임용대상자의 교육·연구실적과 학과(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)의 기여도를 종합 검토하여 학과 인사위원회(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운영위원회)의 심의를 거쳐 추천서류를 첨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임용목적, 기간, 임무(교육·연구·봉사), 임용조건 등을 활용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방문·대우·연구교수의 임용자격은 본 대학 전임교원의 각 직위별 자격기준에 준한다. (개정: 2014.5.1)(개정: 2019.1.1)

② 대외기관과의 교류협정 체결에 따라 타기관에 소속된 인사를 방문·겸직교수로 임용할 경우 총장은 임용절차를 따로 정하여 간소화 할 수 있다. (개정: 2019.1.1)

③ (삭제: 2019. 8. 1)

④ (삭제: 2019. 8. 1)

⑤ 본 대학소속 비전임교원은 산학협력단 소속을 겸한다. (신설: 2007.2.16)

⑥ 비전임교원을 공개임용할 경우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의2 제1항 및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조의8 제1항을 준용한다. (신설: 2019. 8. 1)

제3조의2(방문·대우·연구교수의 승진임용절차) 방문·대우·연구교수의 승진 임용은 승진 대상자가 제출한 업적요약서에 대한 학과 인사위원회 (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운영위원회)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시행한다. (개정: 2019.1.1)

제4조(개별계약의 원칙 및 임용기간) ① 비전임교원의 임용계약은 개별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사이에서도 계약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. (개정: 2014.5.1)(개정: 2016.3.16)(개정: 2019.1.1)

②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. (개정: 2019.1.1)

1. 석학·특임·방문·대우·연구·기금·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, 재임용할 수 있다. 다만, 학과특임교수 운영세칙에 따라 본교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 학과특임교수로 임명되어 정년퇴직 후 특임교수로 임용되는 자의 임용기간은 학과특임교수 임명기간으로 한다.

2. 겸직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, 재임용할 수 있다. 단, 소속기관의 임용이 종료된 경우 겸직교수의 임용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.

③ (삭제: 2019. 8. 1)

④ (삭제: 2019. 8. 1)

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(개정: 2016.3.16)(개정: 2019.1.1)

제4조2(당연퇴직) 비전임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. (신설: 2013.3.1)

제4조3(직위해제, 징계) 비전임 교원의 직위해제, 해임 및 징계는 교원인사규정 제37조 및 제39조를 준용할 수 있으며, 학과의 폐과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(신설: 2013.3.1)

제5조(추천시기 및 제출서류) ① 비전임교원의 임용 추천시기는 임용 희망일로부터 최소 3개월전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 (개정: 2014.5.1)(개정: 2019.1.1)

② 비전임교원의 임용 시 제출서류는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. (개정: 2014.5.1)(개정:2019.1.1)

1~6.(삭제: 2019.1.1)

③ (삭제:2019.1.1)

제6조(방문 및 대우교수의 처우) ① 방문 및 대우교수의 처우는 학력과 교육 및 연구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 단, 교비로 지원하는 대우교수의 임용 및 처우 기준은 따로 정한다. (개정: 2015.3.1.)(개정:2019.1.1)

② (개정: 2007.2.16.) (삭제: 2015.3.1.)

③ (삭제: 2007.2.16)

④ 방문 및 대우교수는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. 다만, 주임교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학과 전임교원과 공동지도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. (개정: 2019.1.1)

제6조의2(석학교수의 처우) 석학교수의 처우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개정: 2016.3.16)

제6조의3(특임교수의 처우) 특임교수의 처우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본교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 학과특임교수로 임명되어 정년퇴직 후 특임교수로 임용되는 자의 처우는 학과특임교수 운영세칙을 따른다. (신설: 2014.

5.1)(개정: 2016.3.16)(개정: 2019.1.1)

제7조(겸직교수의 처우) ① 겸직교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, 강의를 수행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: 2019.1.1)

② (삭제: 2019.1.1)

③ 겸직교수는 본 대학에서 단독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으나 전임교원의 공동 연구원 자격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.

④ 겸직교수는 일반대학원에 소속된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. 단, 주임교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학과 전임교원과 공동지도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.

⑤ 겸직교수는 소속학과의 교과과정 및 기타학과업무에 관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, 학과 및 전체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, 투표권은 행사할 수 없다.

⑥ 겸직교수는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해 교원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제8조(겸임교수의 처우) (삭제: 2019. 8. 1)

제8조의2(연구 및 기금교수의 처우) ① 연구교수의 보수는 본인 또는 소속학과(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)의 연구비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,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. (개정: 2019.1.1)

② 기금교수의 보수는 해당기금에서 지출하며 기금재원이 소진되었을 경우, 기금교수의 임용도 종료된다. (개정: 2019.1.1)

③ 연구 및 기금교수는 원칙적으로 학생논문을 지도할 수 없다. 단,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교수와 공동으로 학생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. (개정: 2019.1.1)

제8조의3(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자격 및 처우) ①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학협력 교육, 연구, 창업·취업 지원 활동 및 연계를 위하여 산업체, 국가기관,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담당 업무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. 다만, 정부부처에서 인정하는 경력 및 학위·자격증 소지자는 그 인정기간을 산업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. (신설: 2013.3.1)(2019.1.1)

1-2. (삭제: 2019.1.1)

②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보수는 학력과 교육 및 연구경력, 산업체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 다만, 정부 등 외부기관에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 (개정: 2019.1.1)

③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학협력업무에 전담하되, 필요에 따라 본교 강의와 학

위논문 공동지도교수를 할 수 있다. (개정: 2019.1.1)

제9조(시간강사의 처우) (삭제: 2019. 8. 1)

제10조(기타 지원사항) 비전임교원의 기타 지원사항은 개별계약에 따르되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. (개정: 2007.2.16)(개정: 2019.1.1)

1. 숙소는 대학의 주거배정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며, 월사용료와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. (개정:2019.1.1)
2. 부임경비는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초빙의 경우 본인의 왕복 항공료는 대학에서 지급할 수 있다.
3. 사회보험가입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. (개정: 2019.1.1)
4. 국제 및 시외통화료는 본인이 부담하며,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공용전화 통화료는 대학에서 부담한다.
5. 연구실은 주임교수 재량으로 배정하며, 출장비등 기타경비는 연구비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6~7. (삭제: 2019.1.1)

제11조(강의시간의 제한) ① 겸직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주당 6시간을 초과하여 교과목을 담당할 수 없다. (개정: 2019.1.1)

② (삭제: 2019. 8. 1)

③ (삭제: 2013.3.1)

④ (삭제: 2019. 8. 1)

⑤ 연구교수는 원칙적으로 강의를 담당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 (신설: 2013.10.1)(개정:2019.1.1)

제12조(규정의 준용) 이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하며,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세칙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.
2. 이 세칙 제정 이전에 실시한 업무 등은 이 세칙에 의해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1998년 6월 17일 개정하여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0년 1월 14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3년 8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2007년 2월 1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세칙 개정시행 이전에 처리된 산학협력단 겸직에 대해서는 이 세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4년 5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6년 3월 1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